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상세보기|미 서부지역 산업정보(숨김) |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

25. 4. 1. 오후 1:49

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 2017-09-19

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

2017-09-19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

- 소량의 물품만 'Not for Sale' 표기해야 무관세 통관 가능 -
- 물품 가치가 2500달러 초과 시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(BIT)이나 까르네(Carnet) 이용 -
- □ 미국 상업용 샘플 통관 개요
- ㅇ 물품 주문을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량의 상업용 샘플은 무관세 소비 통관(Duty Free Consumption Entries)이 가능 함.
- ㅇ 무관세 소비 통관의 경우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.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 하고 있음.
 - 제품에 'Not for Sale'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이어야 샘플 통관이 가능
- o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는 물품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(TIB) 또는 까르 네(Carnets)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이라고 명시함.
- □ 샘플의 정의
 - o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수입(TIB)과 까르네(Carnets) 조항 적용을 위해 미국 세관은 '샘플'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.
 - 주문을 위한 전시 또는 주문량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없음.
 - 샘플은 판매될 제품과 정확히 동일할 필요가 없고 사이즈나 소재가 다를 수 있음.
 - 제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미니어처나 잘라진 조각, 의류 스와치 및 섬유 색상 카드도 해당됨.
- 사진은 샘플로 통관될 수 없으나 HS Code 9813.00.20로 통관된 제품은 텔레비전 방송, 패션쇼 사용, 홍보 목적의 촬영, 주문이 이루어질 경우 광고 목적 사용이 허용됨.

- 실제 샘플이 HS Code 9813.00.20으로 통관될 수 있으나 디스플레이 패널, 사인, 배경 장막, 전시 관련 소품은 전문 거래 장비 및 도구를 의미하는 HS Code 9813.00.50으로만 통관될 수 있음.
-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도 샘플로 통관될 수 있는데 항공기 수리를 위한 긴급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샘플이기보다 수리, 변경, 가공을 위한 제품을 의미하는 HS Code 9813.00.05로 통관돼야 함.
- 식품과 같은 소모품 샘플은 전시와 주문을 받기 위한 상업용 샘플로 들여올 수 있으나 시식하거나 사용해 보도록 나눠줄 수 없음. 시식이나 사용해보도록 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돼야 함.
- 표기, 절단, 구멍난 샘플 또는 판매나 샘플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제품은 HS Code 9811.00.60로 무관세 소비 통관(Duty Free Consumption Entries)이 가능함.

□ 옵션 1: 무관세 소비 통관(Duty Free Consumption Entries)

- ㅇ 미국 관세 스케줄(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United States, Chapter 98 Subchapter XI)에 따라, 특정 제품 샘플의 경우 일반적 소비를 위한 통관 제도 하에서 관세 및 쿼터를 면제받고 통관 가능
- o 해당 품목의 수입업자가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량을 미국으로 주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세 가지 품목까지 매우 적은 양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됨.
 - 알코올 음료와 담배 제품은 각각 분기별 1종만이 샘플 통관 가능
 - o 해당 품목별 HS code
 - HS Code 9811.00.20: 상업적 목적으로 알코올을 수입하는 업체가 주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코올 음료 샘플
 - · 맥아 음료 300ml, 알코올 음료 150ml, 기타 알코올 음료는 100ml로 제한
 - HS Code 9811.00.40: 담배 제품, 궐련지, 담배 튜브
 - · 각각의 샘플은 담배 제품 3개 또는 3.5g, 궐련지 25개로 제한
- HS Code 9811.00.60: 9811.00.20, 9811.00.40에 해당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물품의 가치가 1달러 이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에 적절하지 않도록 표기 또는 훼손돼 해외에서 제품을 주문하기 위한 샘플의 용도 이외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제품
- · 제품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 또는 페인트로 'SAMPLE'이라고 표기하거나 섬유의 경우 미국 세관 섬유 샘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단해야 함. 섬유 샘플은 값을 받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넘길 수 있음. 샘플 신발에는 지워지지 않는 곳에 분명히 볼수 있도록 'SAMPLE-NOT FOR RESALE'이라고 표기해야 함.

□ 옵션 2: 통관본드를 통한 임시 수입(TIB)

- o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니거나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관세 지급 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.
 - TIB를 통해 수입 되는 품목은 HS Code 9813.00.05에서 9813.00.75까지 14개의 품목으로 구분됨.
 - 1년의 기한은 미국 재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- HS Code 9813.00.75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 내 재수출되도록 예정된 수출 본드에 의거해 무관세 수입될 수 있으나 6개월의 기한은 연장 불가함.
 -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에 관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(Liquidated Damages)을 지불해야 함.

ㅇ 절차 및 서류

- 물품이 까르네(Carnets) 조항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Customs Form 3461(물품신고서) 또는 7533(적하목록)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Customs Form 7501(수입신고서)를 제출해야 함.
- Customs Form 3461(물품신고서) 또는 7533(적하목록)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Customs Form 7501(수입신고서)는 통관 시 제출
- 입국자가 가지고 오는 수화물의 경우 여행자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, 물품의 총 가치가 250달러인 경우 약식통관(informal entries)이 가능함.
 -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주입된 경우 적절한 경우 우편통관(mail entries) 방식으로 통관됨.

ㅇ 통관본드 요구사항

- HS Code 9813.00.20으로 통관되는 샘플의 통관본드는 해당 제품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관될 경우, 지급해야 하는 관 세와 비용의 110%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함.
- 통관본드 금액 계산시 세금 및 특별관세(국세청 세금,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)가 모두 고려해 단일 거래 통관본드로 통 관돼야 하지만 덤핑 또는 보조금 마진이 5% 이하인 경우 연속적 통관 본드(continuous entry bond)가 사용될 수 있음.
- 항구 및 상업용 선박에서 적재되거나 하역되는 상업용 화물은 화물 가치로 계산한 항구사용료(port use fee)를 포함해 야 하지만, 항구 유지 보수 비용(Harbor Maintenance Fees)은 수입신고서 제출시 지불하므로 본드에 포함되지 않음.

□ 옵션 3: 까르네(Carnets)

- ㅇ 샘플은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무관세 임시 수입 및 운송이 가능한데, 샘플 통관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까르네는 A.T.A Carnet과 TECRO/AIT Carnet 두 종류가 있음.
 - 까르네 적용 범위 및 까르네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미국 연방법 19 CFR Part 114에 명시돼 있음.
 - · 참고: https://www.gpo.gov/fdsys/pkg/CFR-2005-title19-vol1/xml/CFR-2005-title19-vol1-part114.xml
-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약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관세,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보증 협회에서 보증
 - A.T.A Carnet(Admission Temporaire-Temporary Admission Carnet)
 - 물품을 통관에 필요한 세관 서류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증된 국제 세관 서류를 의미
- 까르네 보증은 참여국가에 설립된 국가 보증 협회 체인(the ATA carnet guaranteeing Chain) 통관절차 준수와 준수하지 않을 경유 비용 지불을 까르네 취득자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제 협약에 근거함.
- 미국에서는 '미국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(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, USCIB)'에서 A.T.A. Carnet를 발급하고 있음.

o TECRO/AIT Carnet

- 임시 통관을 위해 타이페이 경제문화사무소(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, TECRO)와 미국 재대 만협회(American Institute in Taiwan, AIT) 간 양자협약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

□ 미국 전시회 참여를 위한 미국 방문 시 체크리스트

ㅇ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과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비 할 것